

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
일괄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011
------	------

2023.09.05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8월 14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】

-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(2023.9.5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 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)

가. 제안이유

-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“서울지방경찰청” 및 “서울지방경찰청장” 이

“서울특별시경찰청” 및 “서울특별시경찰청장” 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에 기존 사용하던 명칭인 “서울지방경찰청” 은 “서울특별시경찰청” 으로 “서울지방경찰청장” 은 “서울특별시경찰청장” 등으로 변경함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가. 조례안의 개요

-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서울 지방경찰청의 명칭 변경 사항을 서울시 조례에 일괄적으로 반영하고자 발의됨.

나.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

-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단체의 치안행정을 자치경찰이 담당함으로써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,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기존의 「경찰법」을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로 전면 개정한바 있음(2020. 12. 22.개정, 2021. 1. 1.시행).
- 동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정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기 위해,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였는바 국가경찰은 범죄예방 및 수사, 대간첩·대테러 작전,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고, 자치경찰은 지역의 생활안전·교통·경비·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.
- 한편 기존의 「경찰법」은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나,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에는 시·도에 시·도경찰청을 두도록 규정됨에 따라, 전국 지방경찰청 명칭에서 일제히 ‘지방’이 삭제됨(2021).

〈 경찰청 명칭 변경 관련 법률 조항 〉

경찰법	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
<p>제2조(국가경찰의 조직)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.</p> <p>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,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.</u> 이 경우 인구, 행정구역, 면적, 지리적 특성,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<u>시·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.</u></p>	<p>제12조(경찰의 조직)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.</p> <p>제13조(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)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시·도경찰청을 두고, 시·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.</u> 이 경우 인구, 행정구역, 면적, 지리적 특성,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<u>시·도에 2개의 시·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.</u></p>

- 이에 동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등 12개 조례에 규정된 “서울지방경찰청” 및 “서울지방경찰청장”이라는 용어를 “서울특별시경찰청” 및 “서울특별시경찰청장”으로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재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Ⅵ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Ⅶ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(박승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1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박승진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곽향기, 김규남, 김성준, 김영철, 남창진, 민병주, 박강산, 박영한, 박칠성, 봉양순, 신동원, 아이수루, 왕정순, 유정인, 유정희, 윤종복, 이병도, 이영실, 이원형, 이종태, 임규호, 임종국, 전병주, 정준호, 한·신, 홍국표 의원(26명)

1. 제안이유

-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"서울지방경찰청" 및 "서울지방경찰청장"이 "서울특별시경찰청" 및 "서울특별시경찰청장"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 기존 사용하던 명칭인 "서울지방경찰청"은 "서울특별시경찰청"으로, "서울지방경찰청장"은 "서울특별시경찰청장" 등으로 변경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다. 기타 : 없음.

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특별시 경찰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 중 이에 관한 규정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서울특별시경찰청장

제3조(「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서울특별시경찰청

제4조(「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부부장검사·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”을 “부부장검사·서울특별시경찰청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서울지방경찰청”을 “서울특별시경찰청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서울지방경찰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서울특별시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
의 개정) 서울특별시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
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경찰청장”으로 한
다.

제6조의2제2항 중 “서울지방경찰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”을 각각 “서울특별시경찰
청장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」의 개정) 서
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
다.

제10조 중 “서울지방경찰청”을 “서울특별시경찰청”으로 한다.

제9조(「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5조제3호 중 “서울지방경찰청”을 “서울특별시경찰청”으로 한다.

제10조(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서울지방경찰청”을 “서울특별시경찰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“지방경찰청”을 “서울특별시경찰청”으로 한다.

제11조(「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서울지방경찰청”을 “서울특별시경찰청”으로 한다.

제12조(「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서울특별시경찰청장

제9조제1항 중 “서울지방경찰청”을 “서울특별시경찰청”으로 한다.

제13조(「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 중 “정보를 「경찰법」 제2조”를 “정보를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지방경찰청 및 경찰서(이하 이조에서 “경찰관서”라 한다)”를 “시·도경찰청 및 경찰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서울지방경찰청장</u></p> <p>4. ~ 7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7조(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서울특별시경찰청장</u></p> <p>4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「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」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5조(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개입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서울지방경찰청</u></p> <p>5.·6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5조(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서울특별시경찰청</u></p> <p>5.·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「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」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·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·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장·복지정책실장이 되고,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부부장검사·서울특별시경찰청</u>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「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」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협력체계 구축 등) ① 시장은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, 자치구, <u>서울지방경찰청</u>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0조(협력체계 구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경찰청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「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사용허가 신청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세종로 차량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<u>서울지방경찰청장</u>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사용허가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경찰청장</u> ----- -----.</p>

「서울특별시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
조례」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실태조사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, <u>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</u>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5조(실태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</u> <u>경찰청장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의2(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, <u>서울지방경찰청장</u>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, 횡단보도 및 교통섬, 노인·장애인의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6조의2(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 <u>서울특별시경찰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보호구역에서의 조치) ① 시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</p>	<p>제7조(보호구역에서의 조치) ① --- ----- -----</p>

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
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과 적극
협약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
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
속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지방경찰
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
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
할 수 있다.

③ ~ ⑤ (생략)

서울특별시경찰청장-----

② -----

----- 서울특별시경찰청장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「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」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공공 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자치구 및 <u>서울지방경찰청</u>,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경</u> <u>찰청</u>----- -----.</p>

「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음주운전 예방활동)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제4호의 예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서울지방경찰청</u>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</p> <p>4. ~ 6. (생략)</p>	<p>제5조(음주운전 예방활동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서울특별시경찰청</u> ----- -----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
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, <u>서울지방경찰청</u>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시설들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지방경찰청</u> 및 경찰서</p> <p>6. ~ 10. (생략)</p>	<p>제10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 ① ----- ----- - <u>서울특별시경찰청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서울특별시경찰청</u> ----- -</p> <p>6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

「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」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관계기관과 협력) 시장은 자율방범연합회의 원활한 운영 및 감독을 위하여 <u>서울지방경찰청</u>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관계기관과 협력)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경찰청</u>----- -----.</p>

「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서울지방경찰청장</u></p> <p>5.·6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4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서울특별시경찰청장</u></p> <p>5.·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간사)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<u>서울지방경찰청</u>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(간사) ①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경찰청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「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2조(정보제공요청 등)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<u>정보를 「경찰법」 제2조에 따른 경찰청,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(이하 이조에서 “경찰관서”라 한다)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2조(정보제공요청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정보를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----- 시·도경찰청 및 경찰서-----</u> -----.</p>